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28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33590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2877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희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1,1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64. 12. 29. 접수 제99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전 1,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56. 8. 6. 접수 제9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0. 2. 20. 매매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64. 12. 29. 접수 제992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 등기’라 한다), 피고는 1973. 1. 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1973. 1. 15. 접수 제285호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은 2007. 4. 20. 유증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07. 5. 2. 접수 제25452호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6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제 등기가 경료된 후 약 6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재산관리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